

#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83,385,656	38,501,570
일반회계	1,084,957,595	32,548,728
특별회계	198,428,061	5,952,842
공기업특별회계	153,233,117	4,596,99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698,061	2,120,9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535,056	2,476,052
기타특별회계	45,194,944	1,355,848
주택사업특별회계	8,000	240
수질개선특별회계	2,015,575	60,46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986,214	209,586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563,915	616,917
교통사업특별회계	14,117,240	423,517
대지보상특별회계	800,000	24,000

제 2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1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5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